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0 발의연월일: 2020. 10. 5.

발 의 자:허은아·강민국·추경호

金炳旭・이태규・최승재

강기윤 • 백종헌 • 황보승희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라 함)는 가능한 많은 '앱 마켓'에 자신의 모바 일콘텐츠를 등록하여 최대한 많은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함.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앱 마켓'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하여합산 87.8%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들 2개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

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 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는 자 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제50조(금지행위) ①
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	
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
	매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
	<u>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u>
	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